

#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한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2
----------	-------

발의년월일 : 2022. 11. 4.  
발의자 : 한갑수 의원 외 11 명

### 1.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3조 ~ 제5조)
-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 제6조)
- 관리감독 (안 제7조)
- 안전지킴이 위촉 및 운영 (안 제8조)
- 예산 확보 및 포상 등(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1

###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6.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4(관련부서 검토의견)

## 붙임1

#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안산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 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 감독)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한갑수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2)

#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102호
----------	---------

제안년월일 : 2022. 12. 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의미에 맞는 어휘 사용 및 뜻이 중복되는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 (안 제4조제1항)
- “위해성분”을 “유해성분”으로,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아동 및 영유아”로 수정 (안 제4조제2항)

##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해성분”을 “유해성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취학 전 아동 과 유아”를 “아동 및 영유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 략)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u>위해성분</u>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u>취학 전 아동과 유아</u>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8. (생 략)</p>	<p>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단서 삭제〉</u></p> <p>② ----- -----.</p> <p>1.•2. (원안과 같음)</p> <p>3. ----- ----- ----- <u>유해성분</u> -----</p> <p>4. <u>아동 및 영유아</u>----- ----- -----</p> <p>5.~8. (원안과 같음)</p>